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46
----------	-------

발의연월일 : 2026. 1. 22.

발의자 : 김태선 · 허영 · 한민수

김현정 · 김영환 · 장철민

윤후덕 · 김주영 · 박홍배

박정 · 이용우 · 한준호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 휴일 · 야간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고, 연차 유급휴가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른 임금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총액의 형태로 일괄 지급하거나, 기본급 외 연장 · 휴일 ·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되는 임금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 방식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까지 임금 총액에 포함시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 · 휴일 ·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되는 금

액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거나 이를 기본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기록하고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2조의2 신설 등).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포괄임금계약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포괄임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지 못한다.

1. 기본급(연장근로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가산되는 임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하고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2. 기본급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되는 금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정액으로 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3.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데 대한 보상금이 포함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제50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 개시 · 종료 시간을 일 · 주 · 월 단위로 측정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 및 기록은 전자적 방법 또

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인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4항에 따른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 근로자는 본인의 제4항에 따른 기록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측정·기록 및 관리, 제6항에 따른 이의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제1호 중 “제22조제2항”을 “제22조제2항, 제22조의2”로 한다.

제116조제2항제2호 중 “제48조”를 “제48조, 제50조제4항·제5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괄임금계약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p>제22조의2(포괄임금계약의 금지)</p> <p>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포괄임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하지 못한다.</p> <p>1. 기본급(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가산되는 임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하고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p> <p>2. 기본급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되는 금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정액으로 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p> <p>3.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데 대한</p>

제50조(근로시간) ① ~ ③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

보상금이 포함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제50조(근로시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 개시 · 종료 시간을 일 · 주 · 월 단위로 측정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 및 기록은 전자적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인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4항에 따른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 근로자는 본인의 제4항에 따른 기록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측정 · 기록 및 관리, 제6항에 따른 이의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벌칙) -----

-----

-----.

1. -----

